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59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김선교·김예지·박덕흠

구자근 • 이헌승 • 김소희

김성원 · 최수진 · 서천호

김상훈 • 윤상현 • 서지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함)의 구역을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지역축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약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사육·출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관리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동일 가구 내 공동 양축을 하고있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과 같은 가족원은 '축산업 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

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중 "경영하는 농업인"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하는 농업인"을 "경영하거나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
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	
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u>경영하는 농</u>	<u>경영하거나 이에</u>
<u>업인</u> 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종사하는 농업인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u>경</u>	② <u>경</u>
<u>영하는 농업인</u> 의 범위는 대통	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
령령으로 정한다.	<u>୍</u> ପ